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52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4. 5 선고 2021나31290 판결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4. 6 선고 2020가단522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

변 론 종 결 2021. 3. 9.

판 결 선 고 2021. 4. 6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1,865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5. 11. 4. 원고에게 변제기 2017. 11. 4., 이율 연 11%(월 458만 원)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,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(위 대여를 이하 ‘이 사건 대여’라 하고, 위 근저당권을 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.

나. 이 법원은 2018. 4. 19.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(C), 피고는 2019. 3. 25.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402,900,810원을 배당받았다(위 임의경매를 이하 ‘이 사건 임의경매’라 한다).

다.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, 지방세징수법 등에 근거하여 속초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요구를 하였으며,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인 2020. 1. 8. 피고에게 163,473,570원을 배분하였다(위 공매를 이하 ‘이 사건 공매’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, 주식회사 D은 2017. 11. 1. 피고에게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여 LPG 저장탱크 등을 임대한 바 있다(위 임대차를 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’라 한다).

나. 원고는 2018. 4. 4.경 이 사건 대여의 차용자 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의 사이에서,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2018. 4. 5.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, 피고도 이후부터 주식회사

D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,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면제되었다(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를 이하 ‘이 사건 합의’라 한다).

다. 따라서 피고는 위 면제 합의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 내지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원금 5억 원만을 수령하여야 하는데, 2018. 4. 5. 이후부터의 이자까지 위 각 절차에서 수령하였으므로, 1)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 61,865,6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가.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 위와 같은 법리에 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내지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일정한 급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, ② 결국 원고의 주장은 기성립한 이 사건 대여의 이자채권의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상계 유사 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.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, 갑 제6 내지 8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처분문서가 전무한 당해 사안에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과 피고 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, 임대차 개시일은 2017. 11. 1.부터이고, 월 차임은 500만 원이다. 피고 측 계좌에서 2017. 12.경부터 2018. 8.경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,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

의하더라도 주식회사 D 내지 원고 측 명의 계좌에 위 월 차임이 이체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, 결국 피고는 2018년 8월분 차임까지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원고는 2018. 11. 20. 이 사건 대여 등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, 2018. 8.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.

그렇다면 2018. 4. 4.자 이 사건 합의에 따라, 쌍방 모두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와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[한편 피고는 ‘주식회사 D과 피고는 별도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, 주식회사 D이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서, 결국 피고가 2018. 10. 초경 주식회사 D에게 위 계약상의 위약금 13억 7,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. 이와 같이 위약금 지급 사유가 생기게 되자, 피고는 2018년 8월분을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.’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양수도 계약서 및 내용증명서(을 제2호증)를 제출한 바 있다].

2) 이 사건 대여의 이자는 월 468만 원이고,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은 월 5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적지 아니한데, 원고는 위와 같은 차액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하였는지, 만약 주식회사 D이 그 차액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바도 없다.

3) 더욱이 이 사건 임대차상의 차임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인 당해 사안에서, 원고의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위 차임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지성

[별지]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강원도 속초시 잡종지 356㎡
(매각지분 지분 전부 갑구2번- 5분의 2, 갑구7번-10분의 1)
2. 강원도 속초시 답 331㎡
(매각지분 지분 전부 갑구2번- 5분의 2, 갑구7번-10분의 1)
3. 강원도 속초시 전 621㎡
(매각지분 지분 전부 갑구2번- 5분의 2, 갑구7번-10분의 1)
4. 강원도 속초시 전 377㎡
(매각지분 지분 전부 갑구2번- 5분의 2, 갑구7번-10분의 1)
5. 강원도 속초시 임야 7,476㎡
(매각지분 3,738㎡)
6. 강원도 속초시 전 1,950㎡
(매각지분 975㎡)
7. 강원도 속초시 전 139㎡
(매각지분 69.5㎡)
8. 강원도 속초시 임야 479㎡ 중
(매각지분 239.5㎡)

-끝-

1)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은 163,473,570원에는 별도의 가지급금 채권 4,508,780원도 포함되어 있는데,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.

